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양진오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저출생·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여건 조성에 기여코자 함.
- 학생들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되어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, “일반용누진제” 적용으로 지역교육환경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감대책이 필요하며,
-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감면사유 발생 시 대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대상 추가 신설(안 제41조제1항제9호~제11호)
 -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 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수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0. 4. 3. ~ 4. 10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다자녀가구 지원 및 학교시설 요금제 변경,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감면사유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,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교육환경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 감면 및 지원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안정을 고려할 경우,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